#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2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2.

발 의 자:이해식・이기헌・황정아

서영교 · 천준호 · 박상혁

염태영 · 정을호 · 황명선

박정현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맞추어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·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23호)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422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

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3호의 기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)	제5조(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)
①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	①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	
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	
양경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	
한다)를 둔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의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
	제2항에 따른 총경 이상 경찰
	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4. · 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